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6. 3 선고 2021가단1046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1. 30. 체결된 당사자거래이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0. 11. 30. 접수 D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김태환

별지